##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65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임이자·최수진·김성원

이헌승 • 우재준 • 김용태

박성훈 · 김위상 · 김형동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 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 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설치를 추가하 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15조 및 제2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판정 및 조정(調整)"을 "판정, 조정(調整) 및 분쟁해결 지 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 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제1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위원회
- ① 제1항제8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분쟁 조정,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 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제1조(목적)
관한 <u>판정 및 조정(調整)</u> 업무	<u>판정, 조정(調整) 및 분쟁</u>
를 신속 •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	해결 지원
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무)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에 관
	한 업무
<u>3</u> . <u>제1호 및 제2호</u> 의 업무수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u>4</u> . (생 략)	<u>5</u> .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	
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	
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u><신 설></u>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지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
1. ~ 7. (현행과 같음)
8.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제8호에 따른 분쟁조정
위원회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
호를 위한 법률」에서 정하는
<u>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같</u>
은 법에 따른 분쟁 조정, 그 밖
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
<u>다.</u>
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
제3호 및 제4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 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u>제1항</u>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 용을 변상한다.
- ④ (생 략)
- ⑤ 노동위원회는 <u>제4항</u>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3
호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
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u>④</u> <u>제1항 및 제2</u>
<u>ठ</u> ो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u>제5항</u>